

수 신 : 사업장 대표
참 조 : 안전관리(관계)자
제 목 : 2015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동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의거하여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산재보험료 3년간 20%할인**, 안전보건 정기 감독 유예, 재해예방 시설 용자 보조금(클린사업) 우선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니 참석하여 법규준수와 재해감소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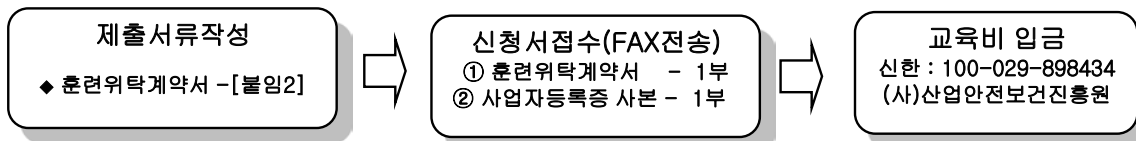
[본 교육 이수시 당해년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으로** 같음 됩니다.]

가. 교육실시 개요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시간		교육장소
제조업업장중	01월21일 ~ 01월22일	2일간 16시간 [09:00~18:00] 08:30 ~ 09:00 [교육 등록]	광주 북구 양산동 403-9번지 본촌산업단지 협의회 교육장

※ 상기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절차



다. 교육비

- ▶ 1인 200,000 - 교재 및 필기구 무료제공
- ▶ 고용보험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원금** 과징 - 환급예정금액 약 90,000원
※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고용보험 가입자만 환급 대상]
- ▶ 교육 2일전까지 사업장 명의로 교육비 입금

★ 공지사항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담당자(교육생)는 **당일변경 불가** (단,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교육2일전까지), **대리참석 불가, 교육당일 접수 불가**하오니 필히 준수바랍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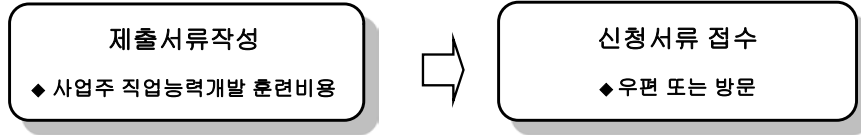
- 붙임 1. 교육비지원과정 및 교육장 안내문 1부.
2. 훈련위탁 계약서 1부 끝.

사단법인 산업안전보건진흥원 이시경



교육비 지원과정 및 교육장 안내

교육비 완급과정 안내



▶ 완급 신청과정

신청은 **교육후 1주(7일)후** 부터 신청 - 교육기관 신고 및 인력공단 행정처리 시간이 1주일소요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 개발팀"으로 접수

▶ 완급 제출서류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원본) - 직인 또는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운 받아 신청서를 작성)
2.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실시 확인서(사본)
3.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계산서(사본)
4. 환급받으실 통장(사본)
(통장명의로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여야함)

교육장 안내

※ 약도



◎ 교육장 주소 본촌산업단지 협의회 교육장
광주 북구 양산동 403-9번지

◎ 주차장 안내 건물 옆 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무료)

교육비지원과정 교육 접수 방법 변경에 의한 교육 신청 안내

(사)산업안전보건진흥원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시 정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중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의한 훈련실시 신고가 **2014년 3월 3일부로 변경**되어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전날** 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을 참고 하여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에 접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 당일날 변경불가** (단, 부득이하게 변경시는 교육 2일전까지 교육훈련위탁계약서에 **변경하여 접수**하여 재접수 후 유선으로 확인)

교육당일 접수 불가 (교육2일전까지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전송한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 정확히 입력요망

- **교육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실시 신고시 사용]**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_____ (이하"위탁인"이라 한다)와 "사단법인 산업안전보건진흥원" (이하"수탁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범위)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①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지정받은 훈련과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내용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인원	1인당 훈련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명	200,000

나. 훈련참가자

위탁기관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주소							상시 근로자수		
	전화		팩스		계산서 e-mail					
▶ 훈련생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위	핸드폰	E-Mail				

※ 16시간 이상(환급)교육과정 신청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은 "위탁인"이 지급한 훈련비에 대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한 고용보험환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훈련개시일로부터 훈련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훈련비 지급 및 환불)

- ① 훈련비는 "위탁인"이 "수탁인"에게 훈련개시일 2일전까지 납부한다.
- ② "위탁인"이 훈련비를 납입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교육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교육개시 2일전까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 불참시 교육개시 2일전 환불신청서를 "수탁인"에게 제출하여야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훈련입소 후 중도퇴소시 훈련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4조(수료 및 통보)

- ① "수탁인"은 "위탁인"이 위탁한 훈련생이 소정훈련시간을 모두 출석한 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한다.
- ② 제 2항에 의거 "위탁인" 위탁한 훈련생이 해당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수료증 발급으로 연수결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위탁인"이 "수탁인"에게 위탁한 훈련생이 "수탁인"이 정한 훈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수료 조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훈련비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제5조(성실의무)

- ① "위탁인"과 "수탁인"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학습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인"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과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탁인"의 귀책사유로 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 과정이 취소되어 "위탁인"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탁인"이 책임을 진다.
- ④ "위탁인"의 귀책사유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위탁인"이 책임을 진다.

제6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의 조문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이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위탁인" 과 "수탁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교육문의 접수처: 1899-7778 FAX (02)809-7900

계약일 : 2015년 월 일

[갑]

회 사 명 : _____
 사업자번호 : _____
 대 표 자 : _____ (직인)

[을]

회 사 명 (사)산업안전보건진흥원
 사업자번호 119-82-10657
 대 표 자 고 흥 소

